

제1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2005년 9월 7일 (수) 10시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
2.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용호 의원 외 20인 발의) 26
4.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진흥실 27

부 록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5
-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보고서 46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과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진흥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32분)

○ 위원장 신용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 시 질의를 마쳤으나 부산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최종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렬 위원 이승렬 위원입니다.

5일날 질의 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걸 조례안을 다룬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이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한이 9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3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습니다. 9월 5일자로 납품을 받았습시다.

○ **이승렬 위원** 9월 5일!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승렬 위원** 제가 질의할 때 9월 5일에 3시쯤에 나온다 그랬지요? 3시 정도 나온다 그랬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승렬 위원** 그런데 지금...

○ **교통국장 윤종대** 시간은 제가 말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이승렬 위원** 그 때가 제가 아마 3시쯤 되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에 앞에 여기 보면 2005년 8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8월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 인쇄가 이렇게 8월이라고 인쇄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을 지시를 하고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종납품은 저희들 9월 5일자로 받았습시다.

○ **이승렬 위원** 아니, 여기 최종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최종보고서인데 그 안에 내용이라...

○ **이승렬 위원** 나온 이후에 또 그랬다 말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이승렬 위원** 나온 이후에 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보완을...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지시

를 했습니다.

○ **이승렬 위원** 요구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이승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산평가에 대해서 자산평가, 여기 보면 제4부 자산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자산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조례 제3조의 자본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2004...

○ **이승렬 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윤종대** 2004년...

○ **이승렬 위원** 자산재평가가 되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산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 말 현재 결산서상의 자산이 추정을 해서 했고 또 2005년도 말 추정으로 지금 그게 나와 있고 중간보고서에 보시면 중간보고회 때도 그 자산은 진단이 되었더했습니다.

○ **이승렬 위원**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왜 중간보고서도 나왔고 그러면 이것이 8월달에 나왔는데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9월 5일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때 나온 별책 인쇄는 어디 갔습니까? 이 8월달은, 별책은 왜 인쇄가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별책 인쇄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이승렬 위원**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 **교통국장 윤종대** 같이 배부되었습니다.

○ **이승렬 위원** 같이 나왔는데 어째 오늘 아침에 이게 왔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 주지도 않고 자료도 제공하지도 않고 그런 자산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받으시려고 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자산부분은 3조 2,000억이라는 저희 입법예고를 할 때 작년...

○ **이승렬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걸

심의를 할 때에 이런 자료를 주지도 아니하고 저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최종보고서도 저희들이 9월 5일 오후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가서 박홍재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사, 그 때가 벌써 3시쯤 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한 이후에 이 최종보고서를 갖다줬습니다. 우리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승렬 위원**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것은 위원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간이 6개월이었고 납품기간이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법안에 담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밖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 **이승렬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니, 그런데 최종 보완하고 최종보고서를 납품 받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교통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자꾸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그렇게 앞으로 회의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요점만 명확하게 답변해서 회의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이승렬 위원** 국장님께서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중간보고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다, 산정을 했다, 이런 보고가 저희들

에게 미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간보고서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에게 미리 주어야 되는데 지금 최종보고서가 우리 정회를 한 이후에 오후에 나왔다는 이것은 누가 봐서도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걸 그렇게 변명하시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처음에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수권자본금의 입법안에 보면 12조원, 용역보고서는 8조원, 조례안은 7조원 그 다음 용역결과에서 5조원에서, 그러면 또 1조원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 3단계를 거칠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 최종보고서에 자산재평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 **교통국장 윤종대** 상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의 사례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 자산평가 결과 3조 2,000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3조를 4배를 하면 12조가 됩니다.

○ **이승렬 위원** 그 답변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1조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상에 우리 위원들이 전혀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도 아니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저께 5일날도 하셨잖아요.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조례안 심의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자산...

○ **이승렬 위원** 답변 없는 걸로 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해 보세요.

○ **교통국장 윤종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권자본금의 산정은...

○ **이승렬 위원** 그것은 5일날 하는데 그 이상...

○ **교통국장 윤종대** 수권자본금의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이승렬 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실 게 없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8조원이 7조원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4배 이내이기 때문에 몇 배를 가산해서 7조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5배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그게 다음에 자본금을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할 때 그게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임의로 4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당하게 7조 5,000억 하기도 그렇고 7조 3,000억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7조원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위원장 신용호**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번에 7조원 하는 것은 뭇 때문에 7조원을 했다, 몇 배를 했다, 그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 **위원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회의 끝나고 지금 답변이 금방 안 될 테니까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그 기준을 잡는데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위원장 신용호**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 위원** 임종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수권자본을 12조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임종영 위원** 교통국장! 맞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임종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권자본이라 하는 것은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수권자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권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도 발행할 수 있고 그 회사의 자산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할 때도 그것이 3배수냐 4배수냐에 따라서 감안해서 자산평가를 하는데 그걸 뭐 그리 복잡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끔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수권자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과거에 우리 교통공단 시절의 이해 못할 부분을 이제 좀 경영쇄신을 해서 재무조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좀 새롭게 관리를 해 보자는 우리 의회의 충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면피성 발언만 자꾸 하니까 화도 나고 그날 경영진 단서에 보면 별책이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날 어디 별책 주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갖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등은 정말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매우 불쾌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금방 지금 심사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주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기이 수권자본을 7조원으로 이제 확정을 지은 것이니까 또 이걸 만일 8조원이다, 뭐 10조원이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면 정말 부산시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권자본은 7조원으로 한 안을 그대로 고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7조원 났다가 8조원 났다가 지난 5일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놈의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고 이런 행정은 정말 이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이사장제는 없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그날 이사는 11인으로 하는 내용 중에서 이사도 대폭 줄여야 되겠다 하는 제안은 우리는 다른 여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데 지난번 교통공단 감사 때에 부이사장제 폐지건의안을 받았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제가 그 때 감사 때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임종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공단에서 나와 있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교통공단에서 나와 있는 사람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백테이터를 주란 말이에요.

○ **교통국장 윤종대** 저희 시의 감사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있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위원장 신용호** 자료에 보면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부이사장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권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바가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발견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한 자료를 주고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 **임종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예.

○ **임종영 위원** 그래서 무엇인가 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뜻이 우리 위원들의 뜻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 **임종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임종영 위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국장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배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공존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기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벌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뭐 하나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좀 그런 뜻이 보여야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몇

가지는 반드시 우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 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썼지요?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용역을 어느 업체에 썼습니까?

○ **재정관 이용호** 한국자치경영평가원하고 동아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썼습니다.

○ **박홍재 위원** 용역을 주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재정관 이용호** 그 부분은 교통국에서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 **박홍재 위원** 교통국에서 합니까?

○ **재정관 이용호** 예.

○ **박홍재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입찰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윤종대** 금년 1월 10일에 용역 제안업체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1월 14일에 용역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2월 11일에 제안서 접수 마감을 했었습니다. 마감을 했을 때 4개 업체가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 2월 15일날 제안설명회를 갖고 2월 15일날 제안 설명회를 들은 이후에 제안서...

○ **박홍재 위원** 됐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평가를 하고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 **박홍재 위원** 됐습니다. 입찰자격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자격제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경쟁입찰을 했다 이랬는데 과연 경쟁입찰이었는지...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쟁으로...

○ **박홍재 위원** 자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자료를 지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리고 입찰방법이 나중에 아마 자격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알겠지만 아마 특정업체를 사전에 아마 약속을 해 놓고...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닙니다.

○ **박홍재 위원** 형식적으로 이것 준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입찰자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200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국내외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포함하여 건당 용역금액이 한화 2억 이상의 경영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받은 기관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회사는 반드시 상기 2개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공동도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이 국내외 업체로 한다 이렇게 제한했는데 국내외 업체는 뭐냐하면 국제입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렇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국제입찰이 상한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얼마까지 국제입찰 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 전문지식은 제가, 죄송합니다.

○ **박홍재 위원** 그걸 모르고 어떻게 입찰을 붙이든지 어떤 방법, 입찰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방법도 모르고 입찰을 붙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기왕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 **박홍재 위원** 행자부 고시에 보면 2004

년 47호 거기 나와 있어요. 국제입찰은 3억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국제입찰에 붙일 수 있다 하는 것 행자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것도 예산 자체가 3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3억입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미달되는 걸 국제입찰을 붙였는데 그 자체도 입찰방법도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협상형 계약을 했는지 현재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현재 몇 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4개 업체, 4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회사규모도 상당히 크고 인원도 이천 몇 백 명 되는 그런 직원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한테 굳이 이 2개 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기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이것 긴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1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박홍재 위원** 이것도 3억의 예산에 계약할 적에 93.83%예요. 93.83%를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했어요. 이것도 금액도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사 명칭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7세 이상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333페이지 보면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지하철공사가 41.7%, 부산교통공사가 3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현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을 비롯해서 대구, 인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를 하는 것은 서울하고 광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부산만 부산교통공사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영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비용을 좀 줄이겠다. 비용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아마 교통공사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진단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비용이 뭐 마크 하는데 비용이 줘니까, 마크 새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교통공사를 지하철공사로 하면 마크 이것 전부 바뀌야 되니까 그런 것 돈 든다, 이런 아마 계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시민이 가장, 여론조사를 해서 그 정도 압도적이라면 여론조사 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 오차가 있다 이래 보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 타이틀 남의 집을 찾아가면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명칭 그 명칭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공사 하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집에 문패 달아놓은 개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름을 어떻게 소홀히 했는지 이것 이해가 안 되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인지가 지하철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했다고 보고, 다음에 지하철공단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경영의 합리화, 경영수익사업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 **박홍재 위원** 경영합리화 이런 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아울러서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체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승객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통공사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이름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거기다가...

○ **박홍재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젊은 층에서 선호를 한다. 10대, 20대 그런 선호

를 한다, 이게 좀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홍재 위원** 그리고 40대, 50대는 지하철 원하는데...

○ **교통국장 윤종대** 젊은 층이 10대가 52%, 20대가 42.7% 선호하는 것도...

○ **박홍재 위원** 그 전체인구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 전체의...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러나 지하철이 나가야 할 방향은 앞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거기에 여론조사 하는 그 자체는 시민 전체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것은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막대한 경비를 들인 것은 아니고 경영진단 전체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 **박홍재 위원**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신,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조에 보면 교통공사의 설립목적 거기 보면 '부산권역 내의' 말이 있습니다. 부산권역 내의, 이 부산권역 내의 그 말을 '부산 교통 생활권의' 그 말로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4조에 보면 '도시권역' 해 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위법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 용어를 썼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것 다시 보세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게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 **박홍재 위원** 그게 수정해야 될 만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보시고요.

○ **교통국장 윤종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러시고, 조례안 제2조 4항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 이래왔습니다. 이것을 버스운송사업으로 그 기준을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으로 현재 이 규정을 하고 한다 해 왔는데 이것을 향후 시의, 부산시의 대중교통 체계의 그 여러 가지 또 개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개편이 없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그럼 개편을 감안해서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공영제,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포함하는 그런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마을버스에’ 라는 그와 같은 말로 한정을 하지 말고,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포함’ 하는 그런 단서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준공영제’ 를, 그 말을 넣으면 그 말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말을 수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일반 지금 노선버스의 업체를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기준으로 한 것은 마을버스 기준은 노선선정을 할 때 일반 노선버스의 6개 정류소를 포함하지, 6개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가 어려운데 버스업체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넣는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홍재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제4조 그리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에 보면 정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으로 정하되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정관을 정할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관을 또 이 최종결정이 되면 정관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지금 여기 이 심의보고서에 보면 서울, 인천, 대전 할 것 없이 전부다 이 지방공기업 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이걸 현재 방금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그에 따른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심의를 다 받았어요.

○ **교통국장 윤종대** 이거 지금 정관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홍재 위원**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56조에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왜 이 정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 시에 이걸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이사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우리가 거론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를 뭐 줄여야 된다, 이사를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정관을 우리가 명확하게 심의할 때 이 조례 심의할 때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 놓으면 우리가 심의하기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근데,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견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회법이라든지 조례에서 너무 묶으면 경영, 자율경영에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홍재 위원**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너무

그냥 빨리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 **박홍재 위원** 결국 누가 해야 되냐? 하나의 줄속처리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된 부분은 본을 받으세요.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관례를 보고 잘 하고 똑같은 조건이지만도 잘 하고 시행을 하는 데는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직할시 관하 잘 되고 있는 본을 받아야 해야죠. 우리가 거기 따라 가지고 가면서 우리 임의대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56조에 의해서 이사회의 수와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압니다. 되어 있는 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다른 시·도에도 그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도 본을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건 아닙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타 시·도는 그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렇게 탁상적,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탁상행정이다. 바로 그게 탁상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뭔가 좀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내놓을 때 뭔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그걸 내놓으면 좋을 텐데.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이 경영진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 **박홍재 위원** 그걸 지금 하지도 않고 지금 그냥 ‘뭐 제출하면 통과되고 다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예, 박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재 위원** 예, 박한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교통공단이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지금 경영진단서가 9월 5일 날짜에 납품이 되었다 했는데 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졌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3월달부터 경영진단을 하는 중간 중간에 자료도 받고, 보시면 알겠지만 부칙 설문조사라든지 미리 그 때 그 때 나올 때마다 충분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간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해서 자문을 받고 또 학계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 내용을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자문회의 결과에 수정 보완 지시가 있는 다음에 수정해서 납품 받은 것이 9월 5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지금 저희들 그 심의하는 위원들은 9월 5일자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에 넘는 진단서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한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없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이 법이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이 즉, 국회에서 제정이 돼서 공포된 것이 7월 13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법을 제정하기 전에 벌써 준비를 해 왔더랬습니다. 왔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 조례에 보시면 부칙에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추진위원회가 지금 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기 때문에 이사회회의 권능을 가진, 기능을 가진 이사회의 기능을 설립추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여개의 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설립 추진협의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도, 지금 해도 9월달에 해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된다면 인수 인계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박한재 위원 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더군다나 부채의 인수라든지 이것도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으면 정부하고 협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박한재 위원 근데 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졸속이고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자, 지금 공단이 연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연 적자의 그 범위를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순수 운영적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 55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한재 위원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공사로 명칭을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한 것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선 부채의 절감방안은 정부로부터 받는 인수하는 부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호선을 곧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을 할 때 1·2호선에 운영했던 인력 3,400명으로, 3,400명에서 다른 거기에서 차출을 해서 3호선을 개통을, 인력을 보

충을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3호선 개통에만 적어도 760여명의 인력이 소요됩니다마는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1·2호선의 인력을 절감을 해서 3호선에 투입을 하고 그 외의 1·2호선에 있던 인력부분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최소한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아까 말씀에 합리화경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합리화경영을 안 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경영, 지금도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직영체제로 있는 많은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해서 외주 수주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하나 하나 정밀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한재 위원 자, 2005년 1월 1일까지 3,424명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네.

○ 박한재 위원 지금 8월 31일 날짜로는 공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00명이 아니고 3,3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재 위원 아! 그럼 줄었네요. 그죠?

○ 교통국장 윤종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한재 위원 그 중에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몇 분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계약직, 일용 임시직은 저희들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공단의 지금 계약직은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4급 1명 있습니다.

○ 박한재 위원 3,400여명 중에서 1명의 계약직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임시직원 전부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한재 위원 경영진단서의 결과를 보면 부산교통공단이 무엇보다도 지금 아웃소싱이

절실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한재 위원** 나왔는데, 국장님은 이 아웃소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기업을 예를 들 수는 없겠습니까라는 일부 기업에서는 관리의 업무, 회계업무까지도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발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용역진단 부분에도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자, 그러면 아웃소싱에 따르는 것은 구조조정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그 인력을 1·2호선에 있는 인력을 3호선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 **박한재 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의 어떤 규모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호선에 있는 지금 3,000...

정확하게 지금 현재 3,3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3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호선에 투입될 인력 760명만 해도, 760명 규모가 아웃소싱이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영진단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관리직 부분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현업 부서를 확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경영을 합리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자, 모든 것이 경영의 합리화가 구조조정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예.

○ **박한재 위원** 교통공단은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책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도 필요한 인력은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무조건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을 주장하는 것은 그 합리적인 경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교통국장 윤종대** 옳으신 지적입니다.

○ **박한재 위원** 그래서 시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이 공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현재로서는 진단보고서의 결과도 지금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공사로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근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공기업을 새로이 설립할 경우에는 위원님 절차대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라는 기이 우리 교통공사는 부산교통, 지금 현재는 교통공단입니다. 공단은 88년도부터 국가공단으로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18여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기업이었고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한재 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적자의 폭은 공단의 적자는 시민의 어떤 재정하고 세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호** 예,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우리 재정관하고 교통국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가 인수한다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적에 그 당시에 5명 한도 내에서 교통공단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 준비를 하라 그 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했는데, 이제까지 인수위원회 구성은 없죠?

○ **교통국장 윤종대** 인수위원회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조직도 저희들 인수를 위해서 도시철도담당, 별도 팀을 담당을 하나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

면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허술하고 시간에 쫓겨서 인수하겠다, 자산평가 하겠다, 조례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9월 8일날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예산, 추경을 확보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용역, 진단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하고 발주를 했더랬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쫓기고 있죠?

○ **교통국장 윤종대** 근데 1년이라는 시간...

○ **김영주 위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쫓기고 있습니까? 안 쫓기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위원회라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는 공식기구가 추진단은 저희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단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능을 주는 위원회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 주셔야 그 권한이 주어지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지금 내년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맞습니다. 예, 쫓기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3조 2,0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진 공단을 인수함에 있어 가지고 준비가 미처 안 되어가지고 인수위원회는 또 뭘 했길래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명확히 하지도 못하고 전전궁궁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과연 부산시가 인수해서 1년에 557억의 적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더 적자를 보일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557...

예, 그러니까 걱정이 상당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교통공단 부산시 공사·공단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장

추천위원회 뿐이라고 보거든요. 사장추천위원회...

사장을 어떻게 해서 잘 뽑았나, 못 뽑았나에 따라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의 기준을 벗어난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신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사도, 또 시에서 시장님께서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거기에서 공기업법, 상위법인 공기업법 상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복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으로 시장님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추천위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줄인다든지, 외부의 위원을 갖다가 좀 많이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규정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그래 하면 되겠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더 했지만 지금 현재 3조 2,000억의 재산에 대한 인수과정에서 경영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쥐가지고 용역결과가 지금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 받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 용역 자체 하나만 가지고 과연 그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신빙성, 정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3조 2,000억 하나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을 들인 용역 한 군대를 가지고 과연 신뢰성,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복수로 되어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경영진단이 되고 2개를 비교해서 좋은 부분을 찾아낸다면 시민의 어떤 신뢰성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2개 정도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2개 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상당히 저희 시에 재정부담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요. 만의 하나 3조 2,000억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자산평가라든지 경영혁신을 함에 있어 가지고 1개가 아니고 10개로 해서라도 더 많은 용역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영혁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보면 교통공단 직원들의 정년이 얼마예요?

○ **교통국장 윤종대** 지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60세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김영주 위원** 60세면 우리 부산 공단이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등에 있어서 정년은 얼마예요?

○ **교통국장 윤종대** 57세 내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되었을 적에.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88년도 이후 운영을 계속 60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다른 공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낮출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률에 상위법인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에 그대로 승계를 하도록 보장

을 하도록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내년에 협상의 소지는 있나요?

○ **교통국장 윤종대** 이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이 똑같은 유형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요? 형평성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니예요?

○ **교통국장 윤종대**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조정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팀제라든지 경영혁신을 위해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하고 팀제도 운영하고 한하는데 그에 대한 무늬만 혁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산 시민을 위한 교통공사의 출범과 함께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장단 주택 인근에 지하철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부분에 있어서 집회신고를 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기획재경위원장님 댁의 앞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집회 신고의 사유가 뭘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 집회 내용은 올바른 교통공사 조례안 제정을 위한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 어느 분 어느 분 집을 막론하고 어디라도 의원들의 집 인근에 집회 신

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원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의 말살이고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지하철 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부산시가 알고 있는 부분.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분들을 만나뵙지를 못해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청회,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또요? 그것 하나 뿐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외의 문제는 저희 시의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도 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재정관!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 **재정관 이용호**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시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23항에 보면 공기업화 추진 총괄은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만의 하나, 만의 하나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또 소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의원의 집 앞에서 물리적으로라든지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권능을 갖다가 빼앗자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가 경영진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영평가라든지 기타 등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의회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주고 또 경영평가 등이 나오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해서 그야말로 최대의 좋은 점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거든요. 요번 이런 건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교통국에서 또 재정관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관여한 부분은 없죠?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 경영평가에 자문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여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교통공단이 앞으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산시 교통공단에 파견될 적에 공사에 파견될 적에 공무원의 명수도 한정을 해야 되겠다. 조례차원에서 한정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정관에도 확실하게 명시해서 낙하산 인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법에 파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타 시에, 타 시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분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장차는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다면 건설부분을 시에 인수를 하게 되어 이관이 된다면 그 건설의 노하우를, 건설의 기술축적을 위해서는 저희 시의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기술도 습득을 하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설인력의 자연 감소가 될 때는 저희 시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인수받을 때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한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 부분도 그야말로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경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운영, 1년에 운영적자만 하더라도 5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하면 그야말로 시민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일부에서는 교통공단의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향아리 조직이다. 이 향아리 조직이다 해 가지고 나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원망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한 경영혁신을 할 준비를 시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락 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윤종대 교통국장 또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이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이야기하면 명칭문제라든지 또 수권자본금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권자본금 문제는 12조가 되었다가 8조가 되었다가 7조가 되었다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본금의 산정자료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영진단 결과에 최종 도출이 되었고 그 전에는 저희들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이 조례가 진단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자료를 반영을 해서 자본금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여론이 있는데 답변을 어제 했습니다. 아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윤종대**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설립을 할 때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설립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의 경우는 기이 1988년도 이후부터 부산교통공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관리주체만 바뀌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통공단 폐지법률안이 지난 7월 13일날 공포가 되면서 그 법에 2006년 1월 1일자로 설립을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김신락 위원** 또 각종 이래 여론을 보면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시의회에?

○ **교통국장 윤종대** 시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신락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착오입니다마는 기획재경위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에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신락 위원** 건교위에?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김신락 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인데,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이 소관위원회가 기획재경위가 아니고 건교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

의 실질적인 관여부서인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신락 위원** 그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일정한 부분, 아까 재정관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 **재정관 이용호** 직제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 **김신락 위원** 중간에 무슨 사전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하시는 말씀이 경영용역보고서가 언제 왔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보면 9월 3일 왔다, 9월 5일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지 않다는 것이 언론에는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에는 부산시에 24일날 제출했다고 다 나와 있고 전국 면에 다 나와 있는데 좀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를 지금 말을 바꾸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 **교통국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앞에 앞선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의회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지적을 하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관계를 잘 서로 파트너로서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의회에 적을 둔 적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시할 생각도 없고,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에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좀 저희들은 판단할 때 최종보고서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늦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신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모든 문제의 발단

이 되니까 조례 하나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의회하고 같이 툭 털어놓고 이래 대화를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신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될 시간이 되게 촉박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남으신 위원님께서도 한 3분 이내에 간단하게 좀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재 위원** 박홍재 위원입니다.

경영진단서에 440페이지에 보면 11조 7항 교통공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도시철도의 건설까지 사업규정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운송, 운송수단 이런 것을 우리 좀 좁은 의미에서 우리 아마 봐지는 것이고 건설, 도시철도 건설하면 지하철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때, 지하철공사는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래 봐지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금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시철도 건설까지 사업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 **교통국장 윤종대** 도시철도라 함은 지하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시철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공단이 도시철도 건설,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건설 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 **박홍재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해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지하철의 교통공단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과연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지겠는지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타 시의 지하철 운영부분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장차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래 한다 했을 때...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을 마치고 나면 저희 시가 건설업무를 인수를 받고...

○ 박홍재 위원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이런 것이 규정을, 이 책도 명칭 자체가 교통공사라는 명칭을 꼭 굳이 우리가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건설 운영을 하고...

○ 박홍재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다음에 기타의 환승체계로 해서 다른 교통수단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재 위원 지금 조례안 제2조 6항에 보면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현재 카드업체하고 계약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계약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로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로카드를...

○ 박홍재 위원 하나로카드를...

○ 교통국장 윤종대 지금 많은 시민들이 80% 이상의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운임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하나로카드를 설립을 할 때 저희 시와 버스조합 그 다음에 교통공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설립을 했고 발행을 하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하나로카드가 지금 현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로카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 교통국장 윤종대 그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을,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 박홍재 위원 지금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니, 그 참여부분의

문제를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 박홍재 위원 현재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로카드의 이 사업하면서, 카드사업 하면서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없습니다.

○ 박홍재 위원 없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서로 업체간에 민간인들 서로 아마 싸움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조건 중에...

○ 교통국장 윤종대 싸움 붙이는 것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 박홍재 위원 조건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 교통국장 윤종대 이게 없으면 저희들 하나로카드 결제수단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 박홍재 위원 지금 하나로카드하고 지금 마이비 아닙니까? 주식회사 마이비, 회사 이름이 하나로카드가...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통공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하고 나면 그게 참여하는 근거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대항할 요건이 없습니다.

○ 박홍재 위원 참여업체를 민간이 참여를 했을 때는 기존 하나로카드에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제2의 제3의 업체가 범람이 되었을 때에 그게 과연 혼란이 와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이 규정을 명시해 해 놓으면 앞으로 어느 업체든 또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카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뜻으로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에 참여하고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 박홍재 위원 좀 우리 시의 안정적인 이런 우리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들쭉날쭉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 2항을 보면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승객에 대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사업법의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철도사업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거기에 대해 8항을 보면 “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래 봤는데 도시철도 면허를 부여하는 사람은 건교부 장관이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건교부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에도 아마 위반이 되지 싶은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건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벌칙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우리 임의로?

○ **교통국장 윤종대** 예,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철도사업법 10조 1항이 그의 징수근거입니다. 그래서 철도사업자는 지금 우리 교통공단은 건설교통부가 운영 관리하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 **박홍재 위원** 이것은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철도이지, 우리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도시철도하고 철도하고 같습니다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을 해서 부가운임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하고 우

리 철도사업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을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례안 11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라 하지 말고 ‘부산광역시’가 더 적절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구·군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는 말을 용어를 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그것은 이 법의 조항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는 그 법 조항에 충실하게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홍재 위원** 국가 및 지방자치의 용어는 지방공기업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 1항의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시장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말을 내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는 이 단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득이한 경우 지장이 있도록’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교통공단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박홍재 위원** 지장 있는데 시장이 지시한다고 사용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사용할 이유도 없고, 지하철공단이, 교통공단이 원만하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은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지장을 줘서까지 시장이 그걸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의 많은 부분을 교통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 박홍재 위원 조례의 규정이라는 것은...

○ 교통국장 윤종대 이 부분을 넣은 것은...

○ 박홍재 위원 현실성 있게 우리 규정을 고쳐야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현실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현실성 있게 그걸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하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제한을 이렇게 시장에, 만약에 필요하다 했을 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 교통국장 윤종대 무조건 안 쓰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그 단서를 하나 붙여야 같이 말을 몇 자 좀 삽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그것은...

○ 박홍재 위원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국가나 부산시가 안은 부채의 상환업무를 공사에게 무리하게 맡기는 것보다는 부산시가 부채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부산시가 인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업무를...

○ 박홍재 위원 옛날에는 건교부...

○ 교통국장 윤종대 공사에 대행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국가업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홍재 위원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박홍재 위원 그러면 공사에 위탁한다면 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시와 부산시가 연대해서 상환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와 공사

가...

○ 교통국장 윤종대 지금 지방채 상환, 채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교통공단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십 수년동안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장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당장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 박홍재 위원 일단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부산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그것도 우리 재산을 공단에다가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 박홍재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만 위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사와 부산시가 연대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말로 우리가 부산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말을 공사와 같이 해 놓으면 좋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이것 연대 안 해도 책임을 저희 시가 집니다.

○ 박홍재 위원 하지만 실제 업무는 그래하더라도 우리 조례의 규정은 말은 제대로 적어놔야 된다. 사실대로 우리가 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박 위원님! 빚을 차입한 것이 부산시가 한 것인데 교통공단이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가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홍재 위원 현재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우리 부산시와 공사가 연대해서 할 수 있다는 두 기관이 우리가 연대를 한다 이거지요.

○ 교통국장 윤종대 일단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홍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 위원 교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아! 마이크 앞에 있네. 거기 앉아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교통기획과장은 우리 국장 의견을 쪽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왜 빨리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면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 **임종영 위원** 가장 바쁜 것이, 그런데 교통국장이 윤국장이 여기 부임한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임종영 위원** 한 달 조금 못 되었든가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과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저는 올해 2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 **임종영 위원** 올해 2월달에?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예.

○ **임종영 위원** 인사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인수추진위원회가?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예, 기획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 **임종영 위원** 그래 기획단도 있고, 인수추진위원회도 있고 그 당시에 이익주씨가 교통국장할 때 그래 했잖아요. 그 인수단장인가 했지요?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 이게 이제 각 지역 광역시에 지하철 가지고 있는 곳에 인수절차가 사실상 다 끝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정부와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 **임종영 위원** 합의는 있었고 전부 인수절차가 내부적으로 다 끝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난 4월인가 그렇잖아요?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채를 총 규모 중에서 국가가 얼마하고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가 얼마 부담을 할 것인가, 그것은 공동합의문에 총 금액은 나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저희 부채 중에서도 이율이나 여러 가지 상환기간이나 다 틀립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그 중에서 부산시가 합의문에 부산시가 우선

적으로 부산시에 4,600억 가량의 가장 좋은 부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 하나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저희가 늦게 된 이유는, 제가 말한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폐지법률안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 폐지법률안이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왜 겪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원의 임기보장 문제하고 직원의 임기보장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와 상당히 논의가 있어 가지고 이 폐지법률안이 조금 7월 13일자로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식적인 조례제정 절차가 그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종영 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인수기획단이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의 대표는 시장이었고 기획단장은 그 당시에 교통국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 **교통기획과장 김규형** 그 전에는 모르고 뒤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부터는 추진협의회 기획단장은 기획관리실장님이시고요, 협의회장은 부시장님입니다.

○ **임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국장이 지금 빨리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 **임종영 위원** 설립추진위원회, 좋습니다.

○ **교통국장 윤종대** 인수위원회 기능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설립추진위원회는 다른 공사의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공단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서 공단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부산시 등 해 가지고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대행할 기능을 가진 기구가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공단 설립하기 전에는...

○ **임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립추진위

원회가 결국 말만 바꾸었지...

○ **교통국장 윤종대**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 **임종영 위원** 기능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닙니다.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야 그 권능을 행사를 합니다.

○ **임종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졌다고 하고, 그러면 규정은 다시 바뀌어졌다고 내나 할 일은 잔여 소위 처리문제 인수인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합의서가 다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 **교통국장 윤종대** 아니, 부채인수위 규모라든지 이것은 법상 지금 정해져서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 또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회사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설립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설립위원회가 그걸 하고 각종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각종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 **임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답변이라 그러면 어제든 들은 이야기이고 그래요 인수위원회가 지금 오늘 당장 처리가 안 되어도 다음 우리 회기...

○ **교통국장 윤종대** 인수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법적...

○ **임종영 위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지금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윤종대** 예, 법적권한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권한을 주셔야지요. 이것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을 주어야 거기에서 정관을 만들 권한을 부여받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 **임종영 위원** 그런데 윤국장님!

○ **교통국장 윤종대** 예.

○ **임종영 위원** 윤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기 용역 준 것 보면 말이죠. 재산평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전부 다 이걸 작업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

상 더 나중에 보시면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 **교통국장 윤종대**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 이게 안에 불과합니다. 이걸 안을 놓고 아까 우리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안을 100% 신뢰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놓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 **임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그것은 그래요. 이것 아무, 별 쓸모가 없어, 이것. 영향평가 해 놓은 것 보면, 경영평가 해 놓은 것 보면 말이죠. 재산평가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조례제정에 제시했던 액수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 전부 다 다르고. 이런 것은 우리 부산시의 또 부산시 지하철을 제일 잘 아는 부발연 같은 데에서 용역대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지. 그런데 하필이면 이래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자치경영평가연구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고, 아니! 우리 그럼 부발연이 동아대학교하고 어느 대학의 경영연구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이것은 윤국장이 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통국장이나 기획실장이 이것부터가 잘못된 기라, 이것부터가요.

그리고 어제 또 5일날 우리가 이 자료 때문에 그만큼 사실 좀 비위가 상했으면 기분도 나빴고 그러면 첨부자료라도 그냥 같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말이지 이제 회의장에 들어오려 하는데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기분상 말이지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그리하여 이것을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연기를 하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호**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락 위원**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중 안 제1조에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산교통권역의 지역적 범위와 대중교통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의 우려가 있고 안 제3조에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2006년 1월 1일 출범 부산교통공사 개시 대차대조표상 추정자본금이 2조 4,000여억원임을 감안할 때 납입자본금의 3배에 해당되는 수권자본금을 산정하여 재무적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 제3항에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임이사의 정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방만하게 운영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정의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2조 내지 안 제15조를 안 제3조 내지 안 제16조로 하고 안 제2조를,

1. 부산교통권역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동일한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라고 신설하고, 안 제4조(제출한 제3조) 중 “7조원”을 “7조 2,00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로 한다)를 시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 (제출한 제4조 제3항) 중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를 “상임이사의 정수는 4인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5조 (제출한 제14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조”를 “제5조”로 하며 안 부칙 제3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신용호**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의 상호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과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설립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안건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 교통공사 설립 조례안과 같이 경영진단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는 예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 또는 이익집단에서 시의원 자택 앞에 이 안전심의회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덤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8건의 현장방문과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의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신용호 김신락 이승렬 김영주
박한재 박홍재 임종영

○ 결석위원

윤승민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실〉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환
경 제 정 책 과 장 배광효
투 자 유 치 과 장 김영득
과 학 기 술 과 장 양문석
노 동 정 책 과 장 허중성
공 업 기 술 과 장 김기곤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예 산 담 당 관 정운광

〈교통국〉

교 통 국 장 윤종대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